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허5386 등록정정(특)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상은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진호

변론종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2. 9. 30. 2022정2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적 사실관계

-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 1) 발명의 명칭: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9. 1. 24./ 2021. 4. 29./ 특허 제2248807호
 - 3) 청구범위

가) 등록 당시 청구범위

【청구항 1】 건물 외부의 공기를 승강로에 유입시키거나 상기 승강로 내 공기를 건물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송풍기가 설치되고, 건물의 각 층마다 상기 승강로의 공기압을 조절하기 위한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설치되어, 건물의 승강로를 제연 덕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승강로의 측벽 내측에 고정 설치되어 상기 승강로의 측벽에 탈거 가능하게 설치된 자동차압급기댐퍼와 상기 승강로 내부 사이에 위치하는 금속 프레임; 및 상기 프레임과 일체 형성되어 다수 개의 구멍을 갖는 안전망을 포함하고, 상기 프레임 및 안전망은 상기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상기 승강로 내부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특징이 있는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

나) 2022. 3. 16. 정정심판 청구되고, 2022. 7. 5. 최종적으로 정정된 청구범위(밑줄 친 부분이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 건물 외부의 공기를 승강로에 유입시키거나 상기 승강로 내 공기를 건물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송풍기가 설치되고, 건물의 각 층마다 상기 승강로의 공기 압을 조절하기 위한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설치되어, 건물의 승강로를 제연 덕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금

속 재질로서, 좌측면, 우측면, 상면 및 하면이 평판으로 이루어지는 금속 프레임 및 상기 금속 프레임과 일체로 형성되어 다수 개의 구멍을 갖는 안전망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상기 금속 프레임 및 안전망은, 상기 자동차압급기댐퍼와 상기 승강로의 내부 사이에 위치되며, 피스를 결합하여 상기 승강로의 측벽 내측에 고정 설치되고(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 상기 자동차압급기댐퍼는 상기 승강로의 측벽에 탈거 가능하게 설치되도록 함으로써(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금속 프레임 및 안전망은 상기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상기 승강로의 내부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이하 '구성요소 2-3'이라 한다)에 특징이 있는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

4) 주요 내용과 도면

개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대 **배경기술**

[0004] 통상적으로 제연 시스템은 건물의 지하실에 설치되어 건물 외부의 외기를 건물 내부로 급기시키는 송풍기, 송풍기와 건물의 제연덕트 사이에 설치되어 제연덕트로의 송풍량을 조절하는 시스템 댐퍼, 제연덕트와 건물 각층의 제연 구역 사이에 설치되어 제연 구역으로의 송풍량을 조절하는 급기 댐퍼를 포함하여, 시스템 댐퍼 및 급기 댐퍼의 개폐 날개의 개폐도를 제어함으로써, 제연 구역이 실내 구역보다 높은 공기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0005] 보다 상세하게는, 급기 댐퍼는 개폐 날개의 개폐각을 조절하여 제연덕트로부터 제연 구역으로 유입되는 송풍량을 조절하며, 제연 구역이 비제연 구역보다 40Pa-60Pa(50Pa±20%) 높은 공기압을 유지하도록 하여 화재가 발생된 실내의 연기 또는 유독 가스가 문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에 따라 <u>제연 구역 내의 공기압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화재 발생시 재실자가 출입문을 열고 피난할 때 출입문이 열림에 따라 화재로 인한 연기가 제연 구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u>

[0007] 한편, 전술한 제연 시스템은 건물 내부의 별도의 공간에 조적 구조를 형성한 전용 덕트를 이용하는 방식(전용덕트 방식)과, 별도의 전용덕트를 형성하지 않고 건물의 비상용

또는 피난용 승강로를 제연 시스템의 제연덕트로 활용하는 방식(승강로 방식)으로 구별될 수 있다.

[0008]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의 경우, 별도의 전용덕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물의 공간 활용이나 비용 측면에서 전용덕트 방식에 비해 유리하다.

[0012] 한편, 전술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은 급기 댐퍼가 승강로와 바로 인접해 있기때문에, 급기 댐퍼가 고정이 잘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급기 댐퍼의 유지·보수를 위해 급기댐퍼를 탈거하였을 경우에는 승강로가 그대로 외부로 노출되어 안전상 크게 취약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0014] 이러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서는 급기 댐퍼(20a, 20b, 20c)가 승강로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급기 댐퍼(20a)가 설치된 위치로부터 이탈되는 경우에 승강로가 외부로 노출되게 되며, 이를 통해 사람이 승강로로 떨어진다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대 **해결 과제**

[0017] 본 발명은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 있어서 승강로의 측벽 내측으로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고정 설치하여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승강로 내부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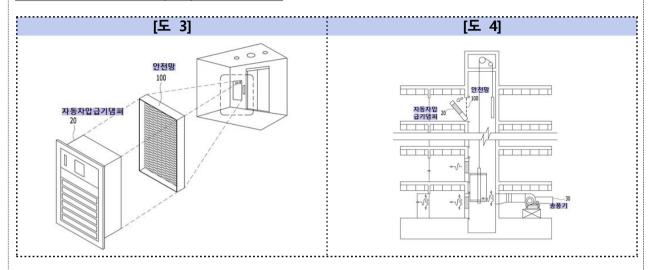
메 발명의 구체적 내용

[0028]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의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은 건물 외부의 공기를 건물 내부의 승강로에 급기시키는 송풍기와, 송풍기와 건물의 승강로 사이에 설치되는 시스템 댐퍼, 승강로와 건물 각 층의 실내 구역 사이에 설치되는 자동차압급기댐퍼 및 시스템 댐퍼와 자동차압급기댐퍼의 개폐 날개의 개폐도를 제어함으로써 승강로 내의 공기압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제어기를 포함할 수 있다.

[0030]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은 기존의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 있어서, 승강로의 측벽 내측으로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고정 설치하여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승강로 내부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것에 특징이 있다.

[0031] 도 3은 본 발명의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의 안전망 설치 형태를 개략적으로 보

인 도면이다. 도 3을 참조하면, <u>자동차압급기댐퍼(20)는 승강로의 측벽에 설치되며, 자동차압급기댐퍼(20)가 설치되는 위치에 자동차압급기댐퍼(20)가 승강로 내부로 이탈되는 것을</u>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100)이 고정 설치된다.



[0032] 본 발명의 <u>안전망(100)은 금속으로 된 사각 프레임 형상에 공기가 유통할 수 있도록</u> <u>다수 개의 구멍을 갖도록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u> 안전망(100)을 승강로의 측벽에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피스를 결합시킬 수 있다.

[0034]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은 건물 외부의 공기를 승강로에 유입시키거나 승강로 내 공기를 건물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송풍기(30)와, 건물의 각 층마다 설치되어 승강로의 공기압을 조절하기 위한 자동차압급기댐퍼(20) 및 승강로의 측벽에 고정 설치되어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승강로 내부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100)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0035] 전술한 본 발명의 안전망이 구비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 의하면, 승강로의 축벽 내측으로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고정 설치하여 자동차 압급기댐퍼가 승강로 내부로 이탈 또는 낙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기존의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 비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갑 제7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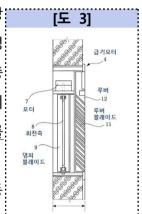
2003. 3. 6. 공개되어 한국 등록특허공보 제10-03-18992호에 게재된 '제연방법'에

관한 특허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아래와 같다.

② 발명이 속하는 분야

[0002] 본 발명은 빌딩, 아파트 등과 같은 고층건물에 화재 발생 시 연기,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도록 제연구역(화재 발생시 각 층의 승강기 앞의 대피구역을 말함)에 외부공기를 강제적으로 공급하는 덕트로서 승강기 승강로를 활용하여 건물 전층의 제연구역에 대해 외부공기 공급량이 일정토록 한 제연방법에 관한 것이다.

[0003] 더욱 상세하게는, 제연구역에 공급되는 설정풍량이 승강기 승강로 내에서 이동시 풍속이 극히 적어서 마찰 손실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어 승강기 승강로 내 상하층간 정압이 유지되어 건물 전층의 제연구역에 설정풍량을 정확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물 전층급기 됐대의 개구면적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이 불필요한 승강기 승강로를 제연덕트로 이용하는 제연방법에 관한 것이다.



[0008] 이 때, 도 3에 개략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화재 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구동하여 전술한 급기덕트(2)로부터 제연구역(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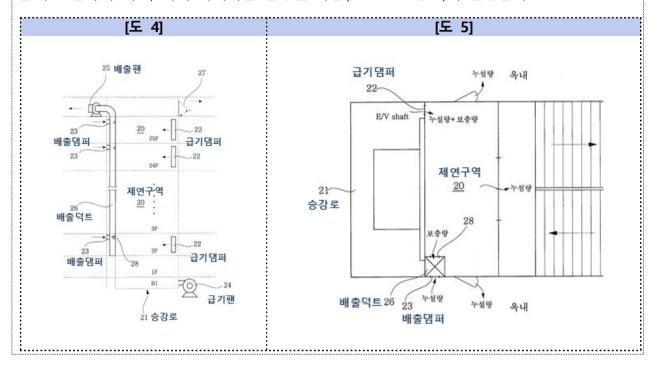
에 공급되는 공기량 및 방향을 제어하는 급기댐퍼(4)는, 모터(7)에 축고정되는 회전축(8)과, 회전축(8)구동시 연동되어 좌우방향으로 각각 회전되도록 링크 및 연결바를 통해 연결되는 수개의 댐퍼블레이드(9)와, 댐퍼블레이드(9)후방으로 고정 지지되어 내부를 은폐시키면서 내부의 해당 부품을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다수의 루버블레이드(11)가 형성된 루버 (louver)(12)로서 구성된다.

③ 발명의 상세한 설명

[0022] 이하에서, 본 발명에 의한 승강기 승강로를 제연덕트로 이용하는 제연방법을 고층건물 및 지하층에 적용한 예를 도 4 및 도 5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0023] 고층건물 및 지하층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수동조작 또는 화재 자동감지장치의 작동에 따라 전술한 급기팬(24) 및 배기팬(25)이 작동하며, 이때 건물 전층의 급기댐퍼(22) 및 배출댐퍼(23)를 개방함에 따라, 급기팬(24)을 통해 외부로부터 흡입되는 신선한 공기는 전술한 승강기 승강로(21)에 유입된 후, 건물 전층의 개방된 급기댐퍼(22)를 통과하여 전층의 제연구역(20)에 순차적으로 급기되는 것이며, 제연구역(20)에 공급되는 공기량이 제연구

역(20)의 각종 틈새를 통해 빠져나가는 누설량과 평형상태를 이룬 후 보충량에 따라 설정 압에 도달하게 되고, 이때 옥내와는 설정된 차압(50Pascal 정도)이 발생된다.



2) 선행발명 2(갑 제10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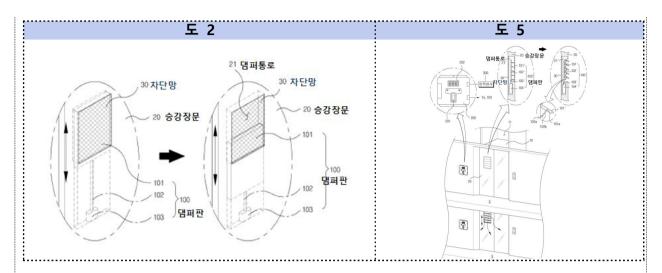
2011. 11. 21. 공개되어 한국 등록특허공보 제10-11-125482호에 게재된 '자동차 압댐퍼를 내장한 승강장문'에 관한 특허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아래와 같다.

① 발명의 명칭 : 자동차압댐퍼를 내장한 승강장문

② 발명이 속하는 분야

[0001] 본 발명은 승강장문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히는 건축물 화재 발생시 피난경로 를 제공하는 건축물의 승강기용 승강장으로 풍압을 공급하는 자동차압댐퍼를 내장한 승강 장문에 관한 것이다.

③ 발명의 상세한 설명



[0024] 상기 길로틴형 자동차압댐퍼(100)가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문(20)에 천공된 댐퍼 통로 (21)의 전방에는, 도 1과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승강장(S) 측에서 상기 승강기(10) 승강로 (11) 쪽으로 이물질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방된 댐퍼 통로(21)에 사람의 손이나 팔을 집어넣지 못하게 사람의 손이나 팔을 집어넣지 못하게 하는 차단망(30°)이 설치되어 있다. [0046] 상기 날개형 자동차압댐퍼(100°)가 설치되는 승강장문(20)에 천공된 댐퍼 통로(21)의 후방에는 승강장(S) 측에서 상기 승강기(10) 승강로(11) 쪽으로 이물질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단망(30°)이 설치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원고는 2022. 3. 16.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앞서 1.가.3)나) 항과 같이 정정하는 취지의 정정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를 2022정26호로 심리한 다음, 2022. 6. 8.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의 일부 정정사항은 특허법 제136조 제4항에 위배되고, 이 사건 정정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7. 5.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2. 9. 30.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 3, 4항에서 규정한 정정요건은 충족하나, 이 사건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136조 제5항에 위배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10호증, 을 제1에서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정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1) 선행발명 1에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안전망과 같이 급기댐퍼의 이탈을 방지할 수 단이 없다.
- 2) 선행발명 2에는 차단망을 금속 프레임과 함께 급기댐퍼 안쪽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급기댐퍼의 이탈 시 그 하중을 견디면서 급기댐퍼가 승강로 내부 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을 시사·암시하는 내용이 없다.
- 3) 선행발명 2는 급기댐퍼를 탈거 가능하게 승강장 문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승강기문 일부를 천공하여 댐퍼 통로를 형성하고 여기에 급기댐퍼를 설치하는 방식이므로,이 사건 정정발명과 같이 급기댐퍼가 승강장문에서 이탈되어 승강로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정정발명의 안전망과 선행발명 2의 차단망은그 과제해결원리가 다르다.

3.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 대비

1	건물 외부의 공기를 승강로에 유입시키거	화재 발생시 급기팬을 구동하여 외부의
	나 상기 승강로 내 공기를 건물 외부로	신선한 공기를 승강기 승강로(21)로 유입
	배출시키기 위한 송풍기(30)가 설치되고,	시키고, 승강로(21)를 통해 흐르는 공기
	건물의 각 층마다 상기 승강로의 공기압	가 급기댐퍼(22)를 통해 제연구역(20)으
	을 조절하기 위한 자동차압급기댐퍼(20)	로 공급되게 하되, 제연구역(20)이 차압
	가 설치되어, 건물의 승강로를 제연덕트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연방법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승강로 방식의	
	제연 시스템에 있어서	
2-1	금속 재질로서, 좌측면, 우측면, 상면 및	
	하면이 평판으로 이루어지는 금속 프레임	
	및 상기 금속 프레임과 일체로 형성되어	대응구성 없음
	다수 개의 구멍을 갖는 안전망(100)을 포	
	함하고	
2-2	상기 금속 프레임 및 안전망(100)은, 상기	
	자동차압급기댐퍼(20)와 상기 승강로의	
	내부 사이에 위치되며, 피스를 결합하여	대응구성 없음
	상기 승강로의 측벽 내측에 고정 설치되	
	고	
2-3	상기 금속 프레임 및 안전망(100)은 상기	
	자동차압급기댐퍼(20)가 상기 승강로의	대응구성 없음
	내부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3	상기 자동차압급기댐퍼(20)는 상기 승강	승강기 승강로(21)의 측벽에 탈거 가능하
	로의 측벽에 탈거 가능하게 설치되도록	게 설치된 급기댐퍼(22)
	함으로써	

나. 공통점과 차이점

1) 구성요소 1, 3

이 사건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승강로의 공기압을 조절하기 위한 급기댐퍼와 팬(송풍기, 급기팬)이 설치되고, 급기댐퍼는 승강기 측벽에 설치되며, 건물의 승강로를 제연덕트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구성요소 2

이 사건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2-1은 '금속 재질로서, 좌측면, 우측면, 상면 및 하면이 평판으로 이루어지는 금속 프레임 및 상기 금속 프레임과 일체로 형성되어 다수 개의 구멍을 갖는 안전망'이고, 구성요소 2-2는 '상기 금속 프레임 및 안전망은, 상기 자동차압급기댐퍼와 상기 승강로의 내부 사이에 위치되며, 피스를 결합하여 상기 승강로의 측벽 내측에 고정 설치되고'이며, 구성요소 2-3은 '상기 금속 프레임 및 안전망은 상기 자동차압급기댐퍼가 상기 승강로의 내부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선행 발명 1에는 위와 같은 구성요소들이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다. 차이점에 대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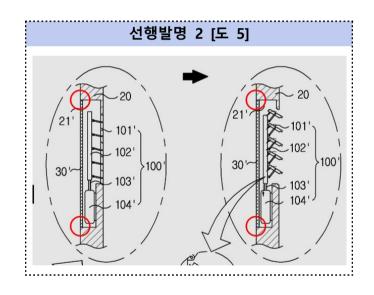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 1) 선행발명 1에 이 사건 정정발명과 같은 안전망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어떤 구조물이 한쪽 방향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을 두거나 이탈 방지펜스, 이탈방지망 등을 설치하고, 망을 설치할 경우 형태 유지나 결합의 편의 등을 위해 해당 망의 둘레에 프레임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의 창작 범위에 있고, 이로 인한 효과역시 기술적 상식 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 2) 더욱이 선행발명 2는 건물의 승강로를 제연덕트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정 정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는데, 선행발명 2에는 "상기 날개형 자동차압댐퍼가 설 치되어 있는 승강장 문에 천공된 댐퍼 통로의 후방에는 승강장 측에서 상기 승강기 승강 로 쪽으로 이물질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단망"이 기재되어 있고, 선행발명 2의 도

면5에도 댐퍼 뒤에 차단망이 설치되는 구성이 명시되어 있다.

3) 선행발명 2에 차단망의 구체적인 형상이나 고정방법, 차단망이 자동차압댐퍼가 승 강로 쪽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는 없으나, 이로써 선행 발명 1, 2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에 이르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적으로 '망'은 마무리 또는 안전을 위해 테두리부를 가질 수 있고, 선행발명 2의 도면 5에 차단망(30`)과 승강장문(20)의 연결구성을 고려할 때 선행발명 2의 차단망도 프레임 형태의 테두리부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정정발명은 금속 프레임과 일체로 형성된 안전망이 피스를 결합하여 고정된다고 구성하고 있는데, 피스 결합은 통상의 기술자가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결합방법 중 하나이고, 이 사건 정정발명에 특별히 피스로 결합해야만 하는 이유나 사정, 특유한 효과가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다) 자동차압댐퍼가 이탈할 위험이 있다면 자동차압댐퍼 자체도 승강로 쪽으로 투입되는 이물질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압댐퍼가 승강로 쪽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

하는 것 역시 선행발명 2의 차단망의 해결 과제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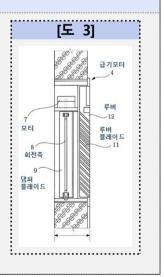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원고는, 선행발명 1에는 내부를 은폐시키면서 내부의 해당 부품을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편칭플레이트 또는 와이어망으로 형성된 루버가 있으므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차단망을 결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선행발명 1의 루버는 급기댐퍼 내부를 은폐시키면서 내부 부품을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안전망이나 선행발명 2의 차단망과는 해결 과제가 다르다. 또한, 선행발명 1의 루버는 댐퍼와 실내 사이에 설치되므로, 이로써 댐퍼와 승강로 사이에 '망'을 설치하는 데 물리적인 장애가 초래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선행발명 1의 루버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차단망을 결합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행발명 1

[08] 이때, 도 3에 개략적으로 도시된 바와 같이, 화재 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구동하여 전술한 급기덕트(2)로 부터 제연구역(1)에 공급되는 공기량 및 방향을 제어하는 급기댐퍼(4)는, 모터(7)에 축고정되는 회전축(8)과, 회전축(8) 구동시 연동되어 좌우방향으로 각각 회전되도록 링크 및 연결바를 통해 연결되는 수개의 댐퍼블레이드(9)와, 댐퍼블레이드(9)후방으로 고정 지지되어 내부를 은폐시키면서 내부의 해당 부품을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다수의 루버블레이드(11)가 형성된 루버(louver)(12)(편칭플레이트 또는 와이어망으로 형성됨)로서 구성된다.



라. 소결

이 사건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5항의 정정요건에 위배되므로, 이

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임경옥

판사 윤재필